

의안번호	2201210
의 퇴 인	송옥주의원
회 답 일	2024.7.9.
추계번호	24B14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0조의2 (난임휴직급여)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에 따른 난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피보험자 중 난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난임휴직급여를 지급함(제1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난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난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난임휴직이 끝난 날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난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에 따른 난임휴직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해당 난임휴직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난임휴직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함. 이 경우 난임휴직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2	안 제74조(준용)	난임휴직급여에 관하여는 제62조 및 제7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함.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난임휴직급여”로, 제7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 급여”는 “난임휴직급여”로, “육아휴직 기간”은 “난임휴직 기간”으로, “육아휴직”은 “난임휴직”으로 봄(제3항)	의무규정
3	안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위탁 및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난임휴직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4	안 제116조(벌칙)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난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70조의2(난임휴직급여) 신설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2	안 제74조(준용)		
3	안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4	안 제116조(벌칙)	—	• 미대상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업주에 대한 벌금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벌금수입이 증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재정수입의 순증가액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¹⁾에 따른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안은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법안이 아님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난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휴직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은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2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안 제70조의2) 개정안의 조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난임휴직의 ①사용자 수 및 ②지원기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

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 첫째, 개정안에 따른 난임휴직의 지급 대상은 난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난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이나,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실제 난임휴직 사용자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 참고로, 공무원의 사례를 활용하는 방법의 경우 「공무원임용규칙」²⁾에 따른 난임휴직이 질병휴직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질병휴직자를 특정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동 개정조항에 따른 사용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
 - 둘째, 개정안은 난임휴직급여에 관하여는 제62조 및 제7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난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
 - 그 결과 난임휴직급여의 지원단가 등을 하위규정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지원단가 및 실제 사용자의 사용기간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난임휴직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함
- (안 제116조)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휴직급여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신고포상금은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를 관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기관별 자체적으로 운영평가를 실시한 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 그러나 동 개정안은 포상금의 지급한도가 명시되지 않아 지급 규모 및 단가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며, 장래에 발생할 난임휴직과 관련한 부정행위의 신고건수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함

2) 「공무원임용규칙」

제71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제58조(질병휴직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불임·난임치료를 포함한다)은 그 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동일 질병으로 2년(법 제72조제1호 단서에 따른 휴직의 경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253.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개정안은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012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